

■ 이사회 등 및 사외이사 운영 현황

I.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

1. 이사회 등의 개요 및 권한

(1) 이사회 개요

- 이사회는 사외이사 3 명, 사내이사 2 명 등 이사 전원 (총 5 명)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김정남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, 선임 사외이사로서 이근영 사외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.
-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에 5 개의 소위원회 (감사위원회, 리스크관리위원회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, 보상위원회, 경영위원회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이사회는 분기별 1 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 해당 이사의 소집에 의하여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

(2) 이사회 역할과 권한

-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운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 및 집행임원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.

2. 현 이사회의 구성원

- 이사회 의장 : 김정남 대표이사
- 선임 사외이사 : 이근영 사외이사

	상임 /사외	담당업무	주요경력	최초 선임일 [계열회사포함]	임기 만료일	재임기간 [계열회사 포함]	비고
김정남	상임	-대표이사 사장 -이사회(의장) -리스크관리위원회(위원장) -경영위원회(위원장) -보상위원회	-동부화재 경영지원 총괄상무 -동부화재 신사업부문 총괄 부사장 -동부화재 개인영업부문 총괄 부사장	2009.06.12 [2001.3.23]	2012.6.11	2 년 [10 년]	73,000 주
황희주	상임	-감사위원회 (상근감사위원)	-삼성화재(주) 감사실장 -애니카랜드(주) 상무이사 -동부화재(주) 상근감사위원	2004.6.10	2013.6.10	7 년	해당없음
이근영	사외	-감사위원회(위원장) -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-리스크관리위원회	-한국산업은행 총재 -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 -법무법인 세종 고문	2010.6.11(당사) [2008.6.24(계열사)]	2012.6.10	2 년 [3 년]	해당없음
김선정	사외	-감사위원회 -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-경영위원회 -보상위원회(위원장)	-한국보험학회 부회장 -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-동국대 법학과 교수	2010.6.11	2012.6.10	2 년	해당없음
이수휴	사외	-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(위원장) -리스크관리위원회 -보상위원회	-재경부 차관 -은행감독원 원장 -보험감독원 원장 -(주)한국컴퓨터 사외이사	2011.6.10(당사)	2012.6.9	1 년 미만	해당없음
						총 이사	5 명
						사외이사	3 명
						사외이사 비율	60%

3. 종전 이사회 의 구성원 및 주요 활동내역

가. 종전 이사회 의 구성원

- 이사회 의장 : 김정남 대표이사
- 선임 사외이사 : 이근영 사외이사

	상임 /사외	담당업무	주요경력	최초 선임일 [계열회사포함]	임기 만료일	재임기간 [계열회사 포함]	비고
김정남	상임	-대표이사 사장 -이사회(의장) -리스크관리위원회(위원장) -경영위원회(위원장)	-동부화재 경영지원 총괄상무 -동부화재 신사업부문 총괄 부사장 -동부화재 개인영업부문 총괄 부사장	2009.06.12 [2001.3.23]	2012.6.11	1년 [9년]	73,000 주
황희주	상임	-감사위원회 (상근감사위원)	-삼성화재(주) 감사실장 -애니랜드(주) 상무이사 -동부화재(주) 상근감사위원	2004.6.10	2013.6.10	6년	해당없음
김선정	사외	-감사위원회 -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-경영위원회	-한국보험학회 부회장 -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-동국대 법학과 교수	2010.6.11	2011.6.10	1년 미만	해당없음
엄흥렬	사외	-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(위원장) -리스크관리위원회	-보험감독원 기획부 기획과장 -보험감독원 기획조정실장 -태양생명보험(주) 관리인	2005.6.15	2011.6.14	5년	해당없음
이근영	사외	-감사위원회(위원장) -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-리스크관리위원회	-한국산업은행 총재 -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 -법무법인 세종 고문	2010.6.11(당사) [2008.6.24(계열사)]	2011.6.10	1년 미만 [2년]	해당없음
총 이사							5명
사외이사							3명
사외이사 비율							60%

나. 종전 이사회 의 주요 활동내역

회 차	개최일자	의안내용	가결여부	비 고
제 44 기 제 1 차	2010.04.20	제 1 호 : 동부하이텍 농업부문 물적분할 등 승인의 건	가결	
제 44 기 제 2 차	2010.04.26	제 1 호 : 제 43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(안) 승인의 건	가결	
제 44 기 제 3 차	2010.04.30	제 1 호 : 대표이사 사장 선임의 건	가결	

제 44 기 제 4 차	2010.05.24	■보고사항 (1) FY2009 주요 경영실적, 주요 추진사항, FY2010 1 분기 주요 계획사항 (2)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(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결과보고 (4)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제출 및 보고 (5) 감사실시 결과 보고	-	
		제 1 호 : 제 43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확정 의 건	가결	
		제 2 호 :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 의 건 제 3 호 : 동부 CNI(주)와의 SLA (Service Level Agreement)계약 갱신의 건	가결 가결	
제 44 기 제 5 차	2010.06.11	■보고사항 (1) 사외이사 모범규준 보고의 건 (2) 자산재평가 실시의 건 (3) 부동산 취득의 건	-	
		제 1 호 :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(선임 사외이사 선임)	가결	
		제 2 호 :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3 호 : 제 44 기 이사보수 집행(안) 승인의 건	가결 가결	
		제 4 호 : 사외이사 제도 운영 효율화의 건	가결	
제 44 기 제 6 차	2010.06.30	제 1 호 : 뉴욕지점 설립 추진의 건 제 2 호 : 집행임원 선임의 건 제 3 호 :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	가결 가결 가결	
제 44 기 제 7 차	2010.08.16	■보고사항 (1) FY2010 1 분기 주요 경영실적, 추진사항, fy2010 2 분기 주요 계획사항 (2) 제 44 기 이사보수 및 CXO 급여 기준 수립 (3)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계약 추진	-	
		제 1 호 : 동부캐피탈(주) CP 할인 대출연장의 건	가결	
		제 2 호 : 뉴욕지점 법률 대리인 임명 위임의 건 제 3 호 : 경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	가결 가결	
제 44 기 제 8 차	2010.09.05	■보고사항 (1) 베트남사무소 설립 (2) 뉴욕사무소 폐쇄	-	
		제 1 호 : 보상위원회 신설의 건	가결	
		제 2 호 : 중국 해외법인 투자 승인의 건 제 3 호 : 동부 CNI(주)와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	가결 가결	
제 44 기 제 9 차	2010.10.08	제 1 호 : 동부건설의 동부금융센터 건물 지분 취득의 건 제 2 호 : 동부월드의 골프회원권 매입의 건	가결 가결	
제 44 기 제 10 차	2010.12.20	■보고사항 (1) FY2010 2 분기 경영실적 요약, 주요 추진 및 계획	-	
		제 1 호 :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제 2 호 : U.S. Branch 자본 증액 승인의 건	가결 가결	
제 44 기 제 11 차	2010.12.31	제 1 호 : 집행임원 선임의 건	가결	
제 44 기 제 12 차	2011.02.09	■ 보고사항 (1) FY2010 3 분기 경영실적 요약, 주요 추진 및 계획	-	
		제 1 호 : U.S. Branch 계리사 임명의 건	가결	
제 44 기 제 13 차	2011.02.25	제 1 호 : 보상 및 고객센터 서비스 전문 자회사 설립의 건	가결	
제44기 제14차	2011.03.31	■보고사항 (1) 주요 경영실적, 추진사항, 주요 계획사항 ('11.2 월 누계)	-	

	제 1 호 : FY2011 사업계획(안) 확정의 건	가결	
	제 2 호 : 자회사와의 손해사정업무 등 위임계약(안) 체결의 건	가결	
	제 3 호 : 동부 CNI와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	가결	
	제 4 호 : 지점 신설의 건	가결	
	제 5 호 : 집행임원 선임의 건	가결	

4.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

가. 감사위원회

1) 현 감사위원회 구성현황

위원회명	위원성명 (현 보직선임일/퇴임일)	설치목적 및 권한사항	비 고
감사위원회	이근영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[설치목적]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·개선	위원장
	김선정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[권한사항] -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-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-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	
	황희주 상근감사위원 (선임:2004.6.10)	-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	

2) 종전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

위원회명	위원성명 (현 보직선임일/퇴임일)	설치목적 및 권한사항	비 고
감사위원회	이근영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[설치목적]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·개선	위원장
	김선정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[권한사항] -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-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-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	
	황희주 상근감사위원 (선임:2004.6.10)	-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	

회 차	개최일자	의안내용	가결여부	비 고
제 44 기 제 1 차	2010.5.24	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-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이사회 제출 - FY2009 연간 감사실적 이사회 보고, FY2010 감사계획 보고 - 감사보고서 이사회 제출 -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	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	

나. 리스크관리위원회

1) 현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현황

위원회명	위원성명 (현 보직선임일/퇴임일)	설치목적 및 권한사항	비 고
리스크관리 위원회	김정남 대표이사 (선임:2010.6.11)	[설치목적] -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 - 리스크관리체계의 선진화 도모	위원장
	이근영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[권한사항] -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 수립 - 회사가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-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	
	이수휴 사외이사 (선임:2011.6.10)	-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·개정 - 월별 리스크관리 현황 - 기타 리스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

2) 종전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

위원회명	위원성명 (현 보직선임일/퇴임일)	설치목적 및 권한사항	비 고
리스크관리 위원회	김정남 대표이사 (선임:2010.6.11)	[설치목적] -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 - 리스크관리체계의 선진화 도모	위원장
	엄홍렬 사외이사 (선임:2005.7.28)	[권한사항] -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 수립 - 회사가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-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	
	이근영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-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·개정 - 월별 리스크관리 현황 - 기타 리스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

회 차	개최일자	의안내용	가결여부	비 고
제 44 기 제 1 차	2010.04.30	제 1 호 :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개정	가결	
		제 2 호 : 리스크관리 규정 개정	가결	
		제 3 호 :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리스크관리기준 신설	가결	
제 44 기 제 2 차	2010.05.17	제 1 호 : FY'10 통합리스크 관련 자본배분 및 한도 설정(안)	가결	
		제 2 호 : FY'10 파생금융거래 전략(안)	가결	
		제 3 호 : FY'10 재보험 운영 전략(안)	가결	
제 44 기 제 3 차	2010.07.16	제 1 호 :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	가결	
		제 2 호 : FY'10 위험(공시이율 등) 수준 결정(안)의 건	가결	

제 44 기 제 4 차	2010.08.03	제 1 호 : 장기보험 재보험운영전략 변경(안) 제 2 호 :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리스크관리기준 개정(안)의 건	가결 가결	
제 44 기 제 5 차	2010.11.24	제 1 호 : 퇴직연금 심사기준금리 초과 적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	가결	
제 44 기 제 6 차	2010.12.20	제 1 호 :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리스크관리기준 개정(안) 제 2 호 : 구조화채권 익스포져 한도증액 및 퇴직계정 신설(안)	가결 가결	
제 44 기 제 7 차	2010.12.22	제 1 호 : 퇴직연금 심사기준금리 초과 적용에 대한 사전 심사	가결	
제 44 기 제 8 차	2011.03.17	제 1 호 : 퇴직연금 심사기준금리 초과 적용에 대한 사전 심사	가결	
제 44 기 제 9 차	2011.03.28	제 1 호 : 퇴직연금 심사기준금리 초과 적용에 대한 사전 심사	가결	

다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
1) 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

위원회명	위원성명 (현 보직선임일/퇴임일)	설치목적 및 권한사항	비 고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	이수휴 사외이사 (선임 : 2011.06.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-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결정 	위원장
	이근영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	
	김선정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	

2) 종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

위원회명	위원성명 (현 보직선임일/퇴임일)	설치목적 및 권한사항	비 고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	엄홍렬 사외이사 (선임 : 2009.12.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-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결정 	위원장
	김선정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	
	이근영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	

회 차	개최일자	의안내용	가결여부	비 고
제 44 기 제 1 차	2010.05.20	제 1 호 :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	가결	

라. 경영위원회

1) 현 경영위원회 구성현황

위원회명	위원성명 (현 보직선임일/퇴임일)	설치목적 및 권한사항	비 고
경영위원회	김정남 대표이사 (선임:2009.6.12)	[설치목적] -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이사회의 효율적 운용 촉진 - 긴급하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경영일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	위원장
	김선정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[권한사항] - 지점의 이전, 폐쇄 - 거래은행과의 당좌 개설 및 연장 -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	

2) 종전 경영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

위원회명	위원성명 (현 보직선임일/퇴임일)	설치목적 및 권한사항	비 고
경영위원회	김정남 대표이사 (선임:2009.6.12)	[설치목적] -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이사회의 효율적 운용 촉진 - 긴급하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경영일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	위원장
	김선정 사외이사 (선임:2010.6.11)	[권한사항] - 지점의 이전, 폐쇄 - 거래은행과의 당좌 개설 및 연장 -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	

회 차	개최일자	의안내용	가결여부	비 고
제 43 기 제 1 차	2009.05.27	제 1 호 : 지점 이전의 건	가결	
제 43 기 제 2 차	2009.07.10	제 1 호 : 장기보상서비스센터 신설의 건 제 2 호 : 지배인 선임의 건 제 3 호 : 지점 이전(보상서비스센터 포함)의 건	가결 가결 가결	
제 43 기 제 3 차	2009.08.07	제 1 호 : 지점 이전(울산지점, 대전지점, 충청보상서비스센터)의 건	가결	
제 43 기 제 4 차	2009.11.11	제 1 호 : 지점 이전 (일산지점)의 건	가결	
제 43 기 제 5 차	2009.11.30	제 1 호 : LA 지점 설치의 건	가결	
제 43 기 제 6 차	2009.12.09	제 1 호 : 하나은행 일종차월 기일 갱신의 건	가결	
제 43 기 제 7 차	2009.12.31	제 1 호 : 임원배상 책임보험 갱신의 건	가결	
제 43 기 제 8 차	2010.01.14	제 1 호 : 지점 이전 (진주지점)의 건	가결	
제 43 기 제 9 차	2010.03.17	제 1 호 : 신한은행 일종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 갱신의 건	가결	
제 43 기 제 10 차	2010.03.31	제 1 호 : 지점 및 보상센터 분리/신설의 건 제 2 호 : 지배인 선/해임 및 변경의 건	가결 가결	

Ⅱ.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

연도	사외이사 총수	신규 선임 사외이사 수	퇴임 사외이사 수	비고
2007	4명 (최종찬, 김정국, 임진부, 엄홍렬)			- 대표이사(의장) : 김순환
2008	4명 (최종찬, 김정국, 임진부, 엄홍렬)			- 대표이사(의장) : 김순환
2009	4명 (최종찬, 김정국, 임진부, 엄홍렬)		1명 (최종찬)	- 대표이사(의장) : 김순환
2010	3명 (엄홍렬, 이근영, 김선정)	2명 (김선정, 이근영)	2명 (김정국, 임진부)	- 대표이사(의장) : 김정남 - 선임사외이사 : 이근영
2011	3명 (이근영, 김선정, 이수휴)	1명 (이수휴)	1명 (엄홍렬)	- 대표이사(의장) : 김정남 - 선임사외이사 : 이근영
			연평균 사외이사 수	3.6명
			최근 5년간 신규선임 사외이사 수	3명
			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	83.3%

※ 「손해보험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」 시행(2010.4.1) 후 사외이사 전원(3명)을 신규 선임하였으나, FY2009 사외이사 총원의 감소(4명→3명)로 인해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일시적으로 충족되지 않고 있음.

당사는 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「손해보험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」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에 근거하여 FY2014 정기주주총회까지 동 규준이 요구하는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* 충족 예정임. (「손해보험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」 부칙 제 3 조 제 3 항)

*)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= 최근 5년간 신규선임 사외이사 / 연평균 사외이사 수

Ⅲ.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및 계획

1. 2010 회계연도 활동내역

사외이사명	이사회		이사회내위원회										활동시간		
			경영위원회		리스크관리위원회		감사위원회		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		보상위원회				
	개최	참여	개최	참여	개최	참여	개최	참여	개최	참여	개최	참여	목표	실적	
이근영	10	10	-	-	7	7	-	-	-	-	-	-	-	-	85
엄홍렬	14	13	-	-	9	9	-	-	1	1	1	1	-	-	120
김선정	10	9	7	7	-	-	-	-	-	-	1	1	-	-	85
김정국	1	1	-	-	-	-	-	-	-	-	-	-	-	-	5
임진부	4	4	-	-	-	-	1	1	1	1	-	-	-	-	30

● 김정국 사외이사는 2010년 4월 20일자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제 44기 제 1차 이사회 이후 활동내역이 없음

● 임진부 사외이사는 2010년 6월 13일자로 임기 만료이므로, 제 44기 제 4차 이사회 이후 활동내역이 없음

2. 2011 회계연도 이사회가 정한 활동시간 의무

- 연간 최소 참석률 : 70% (단,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)
(이사회 내 위원회는 개최빈도가 낮아 70% 최소 참석률 적용 배제)

IV.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내역 및 계획

1.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 평가 방식 및 주기

- 평가 방식
 - ① 자기 평가 : 설문조사에 의한 사외이사 자기평가
 - ② 이사회 평가 : 이사회 참석률에 의한 평가
 - ③ 직원 평가 : 이사회 주관 임원 2명, 주관부서 직원 2명에 의한 설문 평가
- 평가 주기
: 연간 1회

2.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직전 연도 실시여부 및 금년도 실시계획

- 직전 연도 : 2011.5 월 사외이사 평가 완료
- 금년도 실시계획 : 2011 회계연도 종료 후 평가 예정

V. 사외이사의 교육·연수내역 및 계획

1. 2010 회계연도 사외이사별 교육·연수 이수 실적

- 사외이사 모범규준 설명회 : 기완료 (2010.6.11 시행)

2. 2010 회계연도 교육 계획 : 계획 교육 프로그램 및 목표 교육시간

- 상반기 이사회 워크샵 : 2011. 9 월 중
- 하반기 이사회 워크샵 : 2012. 2 월 중

VI.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금 등 지원내역

- 해당사항 없음

VII. 사외이사 지원부서 현황 및 지원내역 등

- 지원부서 : 경영기획파트
- 지원내역
 - 경영실적, 추진 및 계획사항 등 주요 경영정보 제공
 - 사외이사 연간 활동계획,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
 - 관련 법령 및 사외이사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제반 사항 지원
 - 기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